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84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윤한홍·박덕흠·서일준

김성원 • 권성동 • 박형수

유영석·박수민·최수진

김상훈 · 엄태영 · 김석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은 「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,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 국가유공자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857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제39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"를 "제39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4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권리의 보호) ① (생 략)	제19조(권리의 보호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,	②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	
률」 제18조, 「보훈보상대상자	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5조,	
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	
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<u>제39조</u>	제39조,
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	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
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	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
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	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제공할 수 있다.	<u> 의4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